****

|  |  |  |
| --- | --- | --- |
| **C:\Users\82106\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Content.Word\Untitled-1-02.png** | **x** | **텍스트, 클립아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주주간계약서(공동창업) 해설서**

|  |
| --- |
| * **안내사항** ・ 본 계약 해설서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본 계약 해설서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법률문서 양식만을 사용하실 때는 저작자 및 출처 표기가 필요 없으나 본 계약 해설서를 사용하실 때는 본 해설서에 대한 저작자와 출처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수정, 보완, 삭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수정, 보완, 삭제, 변경된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배포하실 때에는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과 동일한 조건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은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이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 법률문서 양식 및 해설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손해 등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ZUZU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점에 동의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실 법률문서 양식은 변호사 등 권한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계약 해설서 제공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주주관리 서비스 ZUZU**

****

****

본 해설서는 주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창업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가장 흔한 경우를 전제로 한 주주간계약서 양식과 해설서입니다. 창업 후 투자자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후 기존 주주와 투자자 간에 체결하는 주주간계약서 양식과 해설서는 시중에 많이 있으나 공동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양식과 해설서는 찾기 어려워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벤처스타트업M&A팀 파트너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해설서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표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용할 법률문서 양식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 사안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주주간계약서**

김대표, 이개발, 박홍보(이하 개별적으로는 ‘주주’, 총칭하여는 ‘주주들’이라 함)는 주식회사 ◯◯◯ (법인등록번호 : - , 이하 ‘대상회사’라 함)의 발기인 겸 주주들로서 대상회사와 주주들 상호간의 이익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해설]통상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주주간계약에 위반하여 의결권이 행사되거나 주식이 처분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주주간계약에 따른 책임만 따를 뿐이고, 해당 주총결의의 효력이나 주식양도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당사자로 포함하여 주주간계약의 내용을 인정하고 그 실현에 조력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음**

**제1조 사업 및 업무 협조**

1. 대상회사의 사업은 \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수익 사업 일체이다.
2. 주주들은 대상회사의 발전 및 사업 성공을 위하여 각자의 역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상회사 업무에 협조한다.

**제2조 주주들의 역할과 책임**

1. 주주 김대표는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의 대내외적 경영을 총괄하고, 주주 이개발은 대상회사 상품 및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업무를 총괄하며, 주주 박홍보는 회사의 마케팅 및 영업 업무를 총괄한다. 주주들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 보수 한도를 승인하고, 주주 김대표는 주주 이개발, 주주 박홍보의 동의를 얻어 이사들의 연봉을 정한다.

[해설] 대표이사인 주주 외 다른 주주들은 등기이사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상근 또는 비상근일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 협의를 통해 등기이사 여부, 상근 여부 등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기재 하시길 권유합니다.

1. 주주 김대표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함에 있어 신주 발행, 주식관련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발행 또는 부여, 중요한 영업, 재산, 권리의 양도, 중요한 채무의 부담 등 주요 업무집행을 수행 함에 있어 사전에 주주 이개발, 박홍보에게 공유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주주 이개발, 주주 박홍보는 주주 김대표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영에 협조한다.
2. 주주 김대표가 제1항 및 제2항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상법 및 정관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초기 스타트업인 점을 고려하여 본 조 1항, 2항과 같이 주주들간 합의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전원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1, 2항 위반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없애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주주들은 대상회사의 경영으로 인한 수익 중 %를 주식 보유 비율로 매 회계연도 정산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월 익월 말일에 주주배당으로 배분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협조한다. 여기서 수익이라 함은 회사의 매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배당가능한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주 김대표는 매분기별 회사의 세전 영업이익을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주주 이개발, 주주 박홍보에게 사전 공유하여야 한다.
3. 대상회사가 제3자 투자 유치를 한 이후에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주주들 간 사이에서는 본 조 제4항의 수익 배분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해설] 주주간 주식 보유 비율과 약정 조건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당사자들간 의견이 대립하여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 숫자나 등기 이사 숫자 등을 고려하여 교착 상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조항을 주주간계약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조 주식의 양도 제한**

주주들은 본 약정일로부터 00개월간(이하 “양도제한기간”) 다른 주주 모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의 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모두 포함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매매 및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며, 분쟁이 조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주식에 기반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한다.

[해설]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정도의 장기간의 양도제한기간 약정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해도 무효이고 약정으로 규정해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채권적 효력만 가질 뿐이므로 위반하여 제3자 양수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양수인의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위반에 대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 양도제한기간 후의 주식처분**

1. 양도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 어느 주주(이하 본 조에서 “매도주주”)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주는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매도주주는 다른 주주들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이하 본조에서 “양도통지”)로 위 주식을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는 취지, 예정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양도대상 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조건(이하 본 조에서 “양도조건”)을 명시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3. 다른 주주들은 매도주주로부터 양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_\_일 영업일 이내에 양도대상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의 보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대상 주식을 직접 매수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이하 “**주식우선매수권**”이라 함). 다른 주주들 중 주식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_\_일 영업일 내에 주식우선매수권 또는 제4조의 동반매도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포기 또는 불행사 대상 양도대상 주식은 주식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다른 주주들이 보유주식 비율대로 매수할 수 있다. 양도대상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다른 주주들이 매도주주에게 주식우선매수권 행사 통지를 하여 도달한 날 양도조건 대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른 주주들은 매도주주에게 제3자가 주식 매수를 위해 제시한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1. 양도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 어느 주주(이하 본 조에서 “매도주주”)가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이하 본 조에서 “예정양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매도주주에게 자신의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주주가 예정양수인에게 매도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정양수인에게 함께 매도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매도주주는 보유주식을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한다고 한다는 취지, 예정양수인의 명칭과 주소, 양도대상 주식의 수, 주식의 양도가격,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조건(이하 본 조에서 “양도조건”)을 다른 주주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이하 본 조에서 “양도통지”)하여야 한다.
3. 매도주주로부터 양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주주들은 통지된 조건에 따라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반 매도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른 주주들이 동반 매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한 경우 매도주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직위/역할 포기금지 및 퇴사금지**

1. 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유를 불문하고 \_\_년간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2조의 직위 및 역할을 포기하거나 대상회사에서 퇴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기간 동안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해설] 너무 장기간으로 퇴사 금지 기간을 설정하면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여부도 선택하여 명확히 기재하고, 각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주주별로 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1. 어느 주주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이하 본 조에서 ‘위반주주’), 대상회사에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재직 또는 재임 중인 다른 주주(이하 본 조에서 “재직자”라 한다)는 위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제외한 대상회사 발행 주식수 중 각 재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한 위반주주 보유주식 수량을 위반주주로부터 액면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100%
3.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75%
4.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후 3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50%
5.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 4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25%
6. 재직자는 제1항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주주에게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재직자가 본 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날 해당 재직자와 위반주주 사이에 제2항에 의하여 통상적인 진술과 보증을 포함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재직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회사 또는 대상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통칭하여 “대상회사 등”이라 한다)가 그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대상회사 등이 본 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날 대상회사 등과 위반주주 사이에 제2항에 의하여 통상적인 진술과 보증을 포함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8. 본 조에 의한 권리행사는 위반주주가 제8조에 따라 다른 주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경업금지**

1. 주주들은 대상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 및 대상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_\_년간 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대상회사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하 “경쟁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없다.
2. 주주들은 대상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 및 대상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_\_년간 경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대상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쟁사업을 영위하는 대상회사(이하 “경쟁대상회사”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 임직원의 직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면서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통상 1-2년 내로 경업금지 기간을 설정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효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손해배상**

어느 주주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주는 상대방 주주가 입은 일체의 손해 및 비용(지연이자, 소송비용, 법률, 회계 기타 자문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본 계약 상 의무 조항을 위반한 주주는 해당 위반행위로 득한 이익 전액을 위약벌로 상대방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지급하기로 한다.

[해설]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경우 효력 강제를 위하여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는 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 계약 제6조 제2항과 같은 콜옵션 조항을 두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풋옵션을 두거나 위반주주의 의결권을 다른주주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간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존속한다.

1. 주주들간에 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대상회사가 해산, 청산을 거치는 등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
3.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년이 경과하기 6개월 전에 일방 주주가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단, 이 경우에는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년간으로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본 계약기간 및 본 계약기간 종료 후 [ ]년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며, 본 계약 관련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2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3조** **기타**

기타 사항은 상법 및 정관, 상 관행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하 서명, 날인을 위한 여백)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체결일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당사자들이 각 1부를 보관하기로 한다.

20 . . .

김대표(주민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이개발(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주소

박홍보(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주소